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03
----------	-------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이유

-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류식과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품권의 발행형태 확대(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 포함) 및 신유형상품권 운영 위한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상품권 발행형태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상품권 발행 업체 계약 대상에 신유형상품권 관련 전문 기술 보유 업체 포함(안 제4조제2항)
- 신유형상품권 가맹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
- 상품권 잔액 현금 반환 기준을 지류식 상품권에 한정 적용(안 제7조제4항)
- 신유형상품권 운영과 혼선을 줄 수 있는 지류식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 삭제(안 제11조제2항)
- 상품권 활성화 시책 중 ‘주민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관련, 포괄적 의미의 ‘각종 수당’을 ‘맞춤형 복지혜택’으로 구체화 및 상품권 유통 활성화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신유형상품권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8. 12. 14. ~ 12. 24.(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 불임 1 >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산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 및 신유형 상품권(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상품권”이라 한다)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영대행사”란 제1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2호의 “권면금액”을 “권면금액 또는 구매가격”으로 하고, 제2항제4호의 “발행일”을 “발행일(지류식 상품권일 경우)”로 한다.

- ① 상품권은 지류식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형태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전문업체 또는 신유형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으로 한다.

제5조제각 호외의 부분의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고, 신유형 상품

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가맹점” 을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할인 및 수수료)” 를 “(할인판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종 수당” 을 “맞춤형 복지혜택”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신유형 상품권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상생경제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상생경제과장 김 종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상권활성화팀장 송 해 근
	담당자 성명·전화	황 기 연 (행정 2828)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안산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p> <p>2. ~ 3. (생 략)</p> <p>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p> <p>〈신 설〉</p> <p>5. (생 략)</p> <p>제3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다음 각 호의 권면 금액에 따라 2종으로 한다.</p> <p>1. 5천원권</p> <p>2. 1만원권</p> <p>②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권면금액</p> <p>3. (생 략)</p> <p>4. 발행일</p> <p>5. ~ 9. (생 략)</p>	<p>제2조(정의) 1. “안산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u>형태에 관계없이</u> <u>안산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4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가맹점”이란 <u>제5조에 따라</u>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 <u>및 신유형 상품권(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등, 이하 “신유형 상품권”이라 한다)</u>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말한다.</p> <p>5. “운영대행사”란 제13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3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은 <u>지류식</u> 상품권, <u>신유형</u>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 할 수 있으며, 발행형태는 시장이 결정 한다.</p> <p>②</p> <p>1. (현행과 같음)</p> <p>2. 권면금액 또는 구매가격</p> <p>3. (현행과 같음)</p> <p>4. 발행일(<u>지류식</u> 상품권일 경우)</p> <p>5. ~ 9.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u>할인 및 수수료</u>) ① (생략)</p> <p>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u>할인판매</u>)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u>각종 수당</u>,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혜택</u>,</p> <p>④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3조(신유형 상품권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신유형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대행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③ 운영대행사는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8-103호
----------	---------

제안년월일 : 2019. 1. 2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

□ 주요골자

- 일반적인 입법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형태에 관계없이 안산시장” 을 “안산시장” 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전문업체와” 를 “업체와” 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문 중 “아니할 수 있고” 를 “아니할 수 있다. 다만 ”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생략)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유가증권 제조 <u>전문업체와 인쇄계약</u>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전문업체 또는 신유형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련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계약을</u> ----- -----.	제4조(발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업체와</u> -----.
제5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1.~ 3. (생략) ② ~ ⑤ (생략)	제5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 ----- ----- ----- ----- ----- <u>아니할 수 있고,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업소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u> 1.~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 ----- ----- ----- ----- <u>아니할 수 있다. 다만,</u> ----- ----- -----. 1.~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